

공

고

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-54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(등록취소)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14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(등록취소)

1. 처분대상 : (주)이지커뮤니케이션(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참조)
2. 처분내용 : 기간통신사업 등록취소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 -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
4. 근거법령 :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(등록의 취소 등)
5. 처분일자 : 2021. 9. 8.
6.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,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>

등록번호	사업자명	법인등록번호	대표자	처분사유	처분내용
제110855호	(주)이지커뮤니케이션	121111-**56274	임*범	시정명령 미이행	등록취소